

제428회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4)
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0)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9)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2)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57)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4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 
5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5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6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6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7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71. 문신사법안(대안)
7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 

###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7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7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7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 7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	7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	7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	7
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	7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	7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	7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4) .....	8
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	8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0) .....	8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	8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	8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	8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	8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	8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	8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	8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	8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9) .....	8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	8
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	8
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	8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	8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	8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	8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	8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	8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	8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	8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8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8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2)	8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8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57)	8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8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8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9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9
4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9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9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9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9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5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9
5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9
5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9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9
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9
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9
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9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9
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	9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	9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	9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	9
6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	9
6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	9
7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	9
71. 문신사법안(대안) .....	9
7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 ..	28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8월 25일 자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8월 27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주민 왜 갑자기 웃음이 터지지요?

○박희승 위원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몇 달 만에 법사위를 거쳐서 국방위를 거쳐서 다시 복지위로…… 역시 복지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정은경 장관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합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남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돌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웃음)

집 나간…… 돌아오셨습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5분)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및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 이렇게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30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4)
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0)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9)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2)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5)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4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5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5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6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6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7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71. 문신사법안(대안)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71항 문신사법안(대안)까지 이상 7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률안별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소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4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바탕을 치료보호가 특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 희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와 시범사업 없이 추진한 경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 전 예산이 집행된 과정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및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 의료대란 수습 과정에서 비상진료 대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부당이득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노력할 것,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국립병원 인력 미충원에 대한 개선책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 총 10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등 총 1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재유행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체계적인 결핵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검진 등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검진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결핵검진 이행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등 총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인력의 확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7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4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의료법 등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혈행과 같이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의제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선민 의원, 서미화 의원, 서영석 의원, 민병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와 그 사업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표자는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면서 조건부 신고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생용품도 수입식품 등과 같이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고 식약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안상훈 의원, 최보윤 의원, 강선우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정위탁보호자는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영역에서

는 1년의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경비보조 또는 출연으로 구체화하며, 아동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면서 해당 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해서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장애아동 등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의 내용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던 것을 현행대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통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미숙아 등 통계 관리의 대상을 각호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통계청을 추가하며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서영석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 정신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산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경·면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대응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이 포함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피해조사가 가능하도록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7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6건은 통합 조정하여 8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임미애 의원, 윤준병 의원, 송옥주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것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개정 사항을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면서 늘어난 1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키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이나 사고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서영석 의원, 백종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은 유지하되 상임이사 정원을 1명 감원하며 각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제삼자의 행위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삼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등이 이를 알리도록 하며,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행위 등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과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계 및 요청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 ‘자료의 협조 요청’ 조항에 ‘검진자료의 활용’ 목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종태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현황 등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며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의 시체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등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기증받은 시체를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민형배 의원, 전진숙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 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차지호 의원, 한지아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 원인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하며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중개금지 대상을 미신고 숙박업자로 수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특성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술적 조치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 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건강정보와의 연계·활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 요청 목적에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추가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문신사법안(대안)은 박주민 의원, 윤상현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하였으며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세 분 소위원장님과 각 소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결산 결과 중에 이게 누락인지 삭제인지 위원장님 확인 부탁드리고 혹시 삭제일 경우에는 추가를 요청하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사업 관련된 내용이고 내역사업 중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 지원사업에 대한 결제 방법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이 삭제 또는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후에, 이게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제도개선을 추가해 주실 수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부대의견으로라도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일단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사이에 혹시 다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결산 관련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을 2023년 말 건보료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시차가 지금하고 1년 이상 나는데 2023년으로 적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안 됩니까?

누가 아시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민원들이 현장에서 조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좀 파악해서 2023년 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은 왜 23년 것을 해서 시차를 갖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개호 위원 예, 2024년으로 하지 않고 그 전해로 기준을 삼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리고 갑작스럽게 건보 시군구 지사의 관련 직원들 업무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그걸 초과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한시적이고 돌발적인 사무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9월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지급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수당이 확보될 수 있게끔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국립소록도병원 관련해서, 지금 소록도의 병원이나 관사 같은 직접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뿐만이 아니고 섬 전체가 다 병원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게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도로 같은 공공시설물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요.

또 아울러서 거기에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병원 관련 여러 시설들이 있었어요. 적산가옥도 있고 또 보니까 교도소, 형무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성이 떨어져서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요구는 뭐냐 하면 병원과 관사, 그러니까 기능 수행을 위해서 직접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으로 이관을 해 주면 고흥

군에서 도로 관리 같은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산가옥이나 그런,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있어요. 그 시설 관리를 쉽게, 현장성에 입각해서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이걸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또 바꾸어서 기재부가 일반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고풍군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조속히 양해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원과 관사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고풍군으로 양해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소록도병원 현황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또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지난 2소위 때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식약처가 우리 위원들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제대로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를 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인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또 국내 농산물 생산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GMO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지금도 표시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한 26년입니까, 26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유해한지 물어보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지금 GMO들은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합된 것 그다음에 또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완전히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Non-GMO랑 GMO 표시된 것 이 두 가지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알권리를 보호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

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전 가지고 의심하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년 동안 왜 이걸 도입을 안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기존에는 이로 인해서 결국은 식품산업계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 비용이 증가한 결과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GMO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보니까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수용 불가가 26% 정도고 올라도 20% 미만 오를 때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한 46% 됩니다. 결국은 72% 정도가 가격이 오르면 주저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도 물론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표시를 하나 안 하나, 기준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도 유해하지 않았다, 무해했다는 그런 신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대로 홍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하지 않다는 비율이 3년 동안 한 40% 가까이 돼서, 물론 22년부터 24년까지 비율이 점차 낮아졌어요. 그래도 지난해에 36%가 안전성에 대해서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GMO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비율도 22%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지금 수정 제안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박주민 아니, 본인……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지금 우리가 GMO, 소위 유전자변형식품 관련해서 그동안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오랫동안 해 오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20년부터 해 왔습니다.

○남인순 위원 오래 해 오셨는데, 사실 식품업계의 반대로 전면표시제가 시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전면표시제로 가면서 식약처에서는 어쨌든 식품업계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단계별로 품목별로 한다 이렇게 아마 방향을 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수정 제안해 주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현재 사실 우리나라는 이 GMO 곡류 수입이 세계 2위 국가입니

다.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GMO를 쓰는 분야가, 간장이나 주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오랫동안 이런 캠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Non-GMO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많은 분야가 아마 소위 식용유라고 하는 대두유 쪽의 GMO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그것이 GMO 재료인지 아니면 Non-GMO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인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약처장이 이것을 고시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다 이번에 조금 더, 여러 그동안에 협의해 왔지만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절차를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식약처에서도…… 동의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를 놓아 주신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돼서 저희는 적극 동의합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김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윤 위원** 장관님, 먼저 저희가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의료재난 상황에서의 환자 피해조사를 하는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재난의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의무조항으로 했었는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잘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환자단체·시민단체들에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조사를 이 법에 따라서 정부가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환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쭈어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가 조금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하는 목적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은 저희가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개별적인 어떤 개인에 대한 피해조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을 피해조사는 하겠다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난 의료대란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반복되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지금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예지 위원님이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법안 관련돼서는 남인순 위원님이 좀 수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산심사 관련돼서 김예지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김예지 위원님이 내셨던 의견을 삭제하고 정리해서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정부 쪽에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수정할 수가 있으면 수정을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간 그룹 1 대 1 지원 방식을 바우처 방식에서 경상보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적하신 말씀은 주간 그룹 1 대 1 지원 사업이 좀 더 잘 집행되고 제대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방식을 검토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우처 방식에서 경상보조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의 진행 내용이나 개선방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환을 이렇게 확정 짓지는 말고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방식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예지 위원** 그러면 전환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좀 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환할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수용해서 그 방안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검토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예지 위원님, 좀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김예지 위원**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토, 저는 그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우처 결제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이것이 꼭 경상보조다, 바우처다가 아니라 발달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결제 방법을 택해서 이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뜻이 저의 제안 이유였기 때문에 검토 또한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경상보조로 지급하는 방안 등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이 정도의 문구로 하실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문구는 위원장이 하는 식으로 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 보자는 내용을…… 저는 지금 한 장짜리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배포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께?

○남인순 위원 배포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이것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배포가 끝나면 남인순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멈춰 주시고요.

다 배포가 끝났지요? 남인순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이번에 2소위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완전표시제의 대상·품목·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좀 있어서, 원래 사실은 식약처에서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명시적으로 법안에다 넣어야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이수진 2소위원장님과 식약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개정안(대안) 12조의2 2항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대안) 17조의2 2항 중에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아까 부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장 박주민 다른 위원님들은 좀 어떠세요?

○김미애 위원 저기 질의 좀……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위원님 발언 기회를 좀 드리시지요.

○김미애 위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처장님, 아무래도 처장님께서……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12조의2 2항에 있는 심의위원회와 17조의2 2항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같은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다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

성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12조의2 2항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고 그렇다는 거지요? 구별이 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인데 그게 ‘이하 심의위원회로 정한다’라고 앞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고 한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아, 6조에 있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김미애 위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규정, 6조에 있는 이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김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되셨습니까?

○**김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의결 절차를 그렇게 반영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장 박주민** 예,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제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이사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면, 그것을 보태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법은 법 간의 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사 정원 수를 초과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공운법 개정과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훌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것인지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주민** 일단 이수진 위원님 말씀 좀 듣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번 2소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위에서 공운위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고 또 기재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재위 위원장님께 법안 관련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법이 기재위에서도 통과가 돼서 법사위로 가면 그 법과 같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운위법에서 인원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해 줘야 그래야 문제없이, 이게 공공기관들마다 이사들의 정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다른 노동 관련한 노동환경,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사 정원이 15인 미만이라서 문제없이 노동이사가 다 선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관이 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위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법사위에 일단 저희가 보내 놓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돼서 법사위에 와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마 법사위에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별도로 좀 전달해서 차질 없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취지는.

○위원장 박주민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더 의견 있으시면……

○김윤 위원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박주민 예, 김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윤 위원 저희가 23년, 그러니까 작년 23년 예결산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결산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풀로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을 할 때 보니 23년 결산에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나 개선된 사항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들에 저희가 국회에서 결산·예산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지난 결산을 할 때 부대의견을 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실제 형식적으로 부대의견을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 김윤 위원님 보통 저 정도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좀 잘 살펴봐 주셔서 부대의견들이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쟁여 봐 주십시오. 어차피 국정감사가 곧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말씀 주신 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쟁여 보고 또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김예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1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오늘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도 비슷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오늘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문신사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 10년이 걸린 법인데 통과되려고 하니까 되게 빨리 통과되네요.

○**김미애 위원** 기쁘게 하세요.

○**위원장 박주민** 기쁜데 힘들어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문신사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것 10년 동안 해 왔던 법이라서요.

---

## 7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변안의 건

(11시16분)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72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4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변안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남인순 위원님과 김윤 위원님으로부터 변안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대체시험에 관하여 개별 부처가 입법하는 경우 법률의 범위를 소관 부처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새로운 법안에서는 제명과 각 조문에서 식품·의약품분야의 동물대체시험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따라서 변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결산과 법안에 대한 의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과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

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법률안의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신 고견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과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은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식의약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김미애, 이수진, 서영석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대비·대응

등의 사업들은 집행 관리와 사업 추진을 더욱 철저히 하여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제언들을 잘 새겨 질병관리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예.

○이수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지난 결산소위, 1·2소위 때 너무너무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도 애 많이 써 주셨는데요. 워낙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심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들은 복지부가 준비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어 가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소위에서 다뤄졌던 법안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부 법안들은 제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법은 또 공청회가, 물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또 우리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따로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심화시킬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지금 제가 보면 1소위에서는 환자기본법 또 지역의사 양성법, 바이오의약품법 이런 내용들이 사실 공청회가 필요하다라고 회의 때 논의들이 있었고요. 또 2소위에서는 공공의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지능인 법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필수의료 법안은 저와 김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좀 논의해 볼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공청회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청회를 전체회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지 이런 논의들이 차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일정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저도 한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32년여 만의 일인데요.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이라는 것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고요. 현재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이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입니다.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금 관련된 모수개혁, 간호법 등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역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복지 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단체 간 의견을 조율하여 수정대안을 마련해 주신 복지부 관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실 문신사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끝은 아니고요,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복지부 그리고 저희 보복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명옥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그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 ○출석 위원(21인)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최보윤  
한지아

### ○첨가 위원(2인)

윤호중 이주영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2차관 이형훈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배경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성곤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획조정관 이상진

### 【보고사항】

####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강선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2025. 8. 25.
			2025. 8. 27.

#### ○ 의안 회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이상 3건 8월 18일 회부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5)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

이상 4건 8월 19일 회부됨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이상 2건 8월 20일 회부됨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4)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이상 3건 8월 21일 회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8월 22일 회부됨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5)

8월 26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이상 2건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영화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0)

8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2025. 8. 25. 이현승 의원·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3)

8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동의 요청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8.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철회 요구

8월 19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2	-	-	-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	-	3
질병관리청	-	-	-	-	-	1